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64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경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 · 박희승 · 박수현 · 한창민 · 문진석 · 최혁진
전종덕 · 위성곤 · 윤종오 · 손 술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 의안번호 : 1396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 성별 ·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공론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등).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u>이 조에서 같다</u>)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 ----- -----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 ----- ----- ----- ----- -----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설>	제57조의3(안전공론화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공

현행	개정안
	<u>론조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u> <u>②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u>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u> <u>④ 공론화위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당 안전과 관련된 인구 분포와 비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u>⑤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론화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공론화위원 중 연장자가 공론화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u>⑥ 공론화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⑦ 공론화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의견서를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론화 위원장은 의결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전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론화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표결할 때 제7항에 따른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⑩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공론화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간 입장이나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뜻하며, 공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사안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여 토론하게 한 후 설문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는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우리 국회 역시 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의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음.

[표-2] 국가단위 주요 공론화 사례

구 분	주요안건	주관기관	규모	결과	시기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492명	소득보장안 우세 → 「국민연금법」 개정	2024년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선거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69명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 의 비례성·대표성 제고 방안 우세	2023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확충 여부 등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451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 행 정위원회 신설 권고 →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준위 특별법 제정	2020년
대입제도 개편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구조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490명	수능 전형 확대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우세 → 2022학년도 대입 개 편안에 반영	2018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국무조정실 (공론화위원회)	471명	건설 재개 권고 → 건설 재개 결정	2017년

자료: 국회 및 정부의 공론화 결과보고서 자료 등 재구성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에 안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공론화위원회가 의견서 또는 심사경과를 보고하면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표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개정안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입법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전공론화위원회가 대화·토론을 통한 합의 노력 없이 다수결을 통해 의견서 의결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¹⁾²⁾

문 의 처
02)6788-5015

-
- 1) 김선화·오창룡,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5.
 - 2) 참고로, 안전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 확보, 전문적인 정보·지식의 제공, 공론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문화가 전제되어야 당초 개정취지대로 동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